상사신용조사규정

제 정 : 1996. 2.17 1차개정 : 1997. 9.20 2차개정 : 1998. 9.19 3차개정 : 1999. 2.10 4차개정 : 2004.11.29 5차개정 : 2007. 7. 5 6차개정 : 2010. 7. 6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신용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범위) 상사신용조사에 관하여 <u>무역</u>보험법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 및 업무방법 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 3 조(조사대상) 상사신용조사(이하 "신용조사"라 한다)는 국내기업, 국외기업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 4 조(조사 신청) 신용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신용조사신청서를 받는다. 다만, 재조사와 신용조사 담당 부서장(조사, 인수, 보상채권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국내외지 사장(주재원)을 포함하며, 이하 "조사담당 부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 5 조(조사의 구분) ① 신용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한다.
 - ② 일반조사는 제3조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신용조사기관 등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조사, 제공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를 말하며, 특별조사는 일반조사에 의한 개 괄적인 정보 이외에 특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.
- 제 6 조(조사방법) ①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.
 - 1. 신용조사기관을 통한 조사
 - 2. 국외지사(출장소, 사무소, 주재원을 포함한다)를 통한 조사
 - 3. 재외공관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
 - 4. 출장에 의한 조사
 - 5. 공신력 있는 간행물에 의한 조사
 - 6. 신청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한 조사
 - 7. 기타 신용조사 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
 - ② 국내기업 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.
 - 1. 신용조사기관을 통한 조사
 - 2. 국내지사(출장소, 사무소를 포함한다)를 통한 조사
 - 3. 금융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
 - 4. 출장에 의한 조사
 - 5. 신청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한 조사
 - 6. 공신력 있는 간행물에 의한 조사
 - 7. 기타 조사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

- ③기타 업무에 필요한 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한다.
- **제 7 조(신용평가자료의 인정기준)** 신용평가시 이용자료는 제6조의 조사방법에 의해 입수된 최신자료로 한다.
- **제 8 조(신용등급평가)** 보험(보증을 포함한다)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 등급을 평가한다.
- 제 9 조(신용정보자료 제공) 국내기업등으로부터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신청받은 경우 신용 정보담당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한다.
- **제10조(신용등급)** 신용등급은 신용도의 우열에 따라 A급, B급, C급, D급, E급, F급, G급 및 R급으로 구분한다.
- 제11조(신용등급의 유효기간) ①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최근 평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G급 및 R급의 경우에는 등급책정 사유가 소멸되어 이전등급을 재부여하거나 재평가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- 제12조(재조사)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재조사를 할 수 있다.
 - 1. 조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신용조사신청이 있는 경우
- 제13조(세부사항 및 위임)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"상사신용조사요령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(제 정)

- 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. 4. 1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수출자, 수입자 신용등급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기준으로 이 규정에 의한 등급으로 조정된다.
 -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조정전 평가일로부터 기산한다.

부 칙(1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. 9. 2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이 규정은 1998. 9. 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이 규정은 1999. . 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이 규정은 2004.11.29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이 규정은 2007. 7. 5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. 9. 16자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관련규정의 폐지) "상사신용조사요강"은 이 규정 시행일에 폐지한다.

부 칙(7)

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